

의안번호	제 299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최미애 의원 외 9명
발의연월일	2012년 3월 12일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99
----------	-----

(최미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2년 3월 12일

발 의 자 : 최미애, 장병학, 박상필, 이광희,
전응천, 최진섭, 하재성, 권기수
이수완, 임헌경

1. 제정이유

충청북도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가. 충청북도지사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안 제3조)
- 나.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함(안 제5조)
- 라. 지원대상을 충청북도내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함(안 제6조)
- 마.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함(안 제7조)

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청북도한부모가족지원협회를 설치(안 제 8조)

사.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을 말한다.
2.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3. “청소년한부모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이면서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조손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란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내용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지원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연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도내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가족관계와 그 부양에 관한 사항
3. 취업, 소득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4. 주거상태, 여가활용, 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 만족도 및 수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청북도내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 및 홍보
2.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교육 지원
3. 한부모가족 주거 및 환경개선
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5. 한부모가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사업

6.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교육·자립 지원 사업

7.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8.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육성사업

9.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한부모가족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한부모가족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부지사

2. 한부모가족지원 담당부서의 장

3.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4.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개발을 추진하는 도 산하기관장

5. 충청북도교육청의 관련부서의 장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계자

2.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관계자

3. 가족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의 관련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 관리조례」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체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退所)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부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부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미혼모자시설 :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모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부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여성복지관 :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職業輔導)를 행하는 등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 입소(入所)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보호 기간과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